

닭·오리 농가의 7대 준수 협조 사항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종식때 까지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.
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조기종식의 밑거름입니다.

- 1** 닭·오리를 도축장 등으로 출하하실 때에는 사전에 가축방역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임상검사·관찰을 받으셔야 합니다.
- 2** 닭·오리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종식될 때까지 분뇨를 농장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불가피하게 분뇨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·군·구에게 문의하시고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** 계란·오리알, 사료·분뇨 차량은 운행 전·후에 적절한 세차 및 소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** 닭·오리를 같은 차량에 공동으로 운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공동으로 운반할 경우 상호 교차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
- 5** 닭·오리 농장에서는 플라스틱 난좌(상자) 대신에 1회용 종이 난좌(상자)를 권장합니다. 만일 플라스틱 난좌(상자)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** 농장에서 소독, 외부인 출입통제, 장화갈아신기(세척, 소독, 건조)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7** 농장에서 닭·오리가 산란율 저하, 폐사율 증가 등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**1588-4060, 1588-9060**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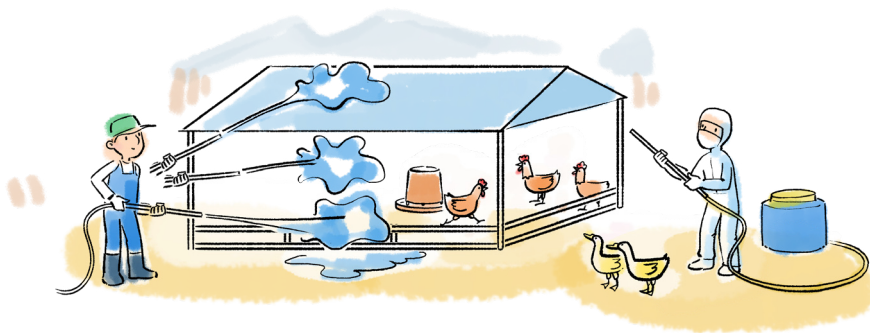
상기 사항은 발생지역이 아닌 비 발생지역에서 농가의 협조 사항입니다.

고병원성 AI 신고·발생 농가와 관련하여 이동제한 지역(10km 이내)에 있는 닭·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는 가축·사람·차량·물건(분뇨·왕겨 등)의 반출·이동이 보다 엄격히 제한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관내 가축방역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야생철새 관련 농가 방역 실시 요령

야생철새 접근 및 철새 분변 접촉을 차단하면,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- 1 축사, 사료창고·왕겨보관창고·분뇨처리장 등 농장내 관련 시설에 야생철새가 들어 오지 못하도록 문단속, 쥐잡기, 쥐 등 동물 출입 차단, 그물망 설치, 비닐 포장 등으로 야생 철새와 접촉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 사료 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하고, 농장 주변에 야생 철새의 숨을 곳 제거 등을 통하여 야생철새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 야생철새 출몰지역(저수지, 하천, 습지, 인근 논·밭 등) 출입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한 출입시 신발, 의복 등 세척 및 소독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 야생철새가 밤중에 축사 주변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매일 아침 축사 주변 분변을 제거 하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축사에 출입하시고, 모든 축사 입구마다 소독 및 축사 출입시에는 신발을 바꿔 신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5 축사주변 농가 출입구에 바닥으로 부터 2~3cm의 생석회를 깔아주어 야생철새의 접근 및 농가 출입 등 흔적 발견시 추적,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 야생철새가 농가 주변에 있거나 야생철새 이동 경로 등에 대한 경보*를 수신하시면 다시 한번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야생철새 경보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전달됩니다.



야생철새 관련 차단방역 요령

▶ 철새도래지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

- 철새 도래지에 출입통제 입간판 설치, 필요시 출입통제초소 설치, 매일 주변지역 소독, 평야지대는 가금류 농가 주위 소독

▶ 야생철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시 조치 사항

- 방역대 설정 : 철새 사체 등 시료 수거장소를 기점으로 반경 10km까지 방역대로 설정
 -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농장은 이동제한 조치하고 예찰 및 소독 강화
-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: 언제든지 AI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, 농장 출입 사람 및 차량을 소독합니다.
 -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,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, 축사·사료 창고에 그물망 설치(보수), 문단속 철저, 축사별 전용장화 착용
 -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. 다만, 불가피하게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
-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 :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소독
 -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·외부를 주2회 이상 소독,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, 축사별 전용장화 착용
 - 사람·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

▶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조치사항

-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: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의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에 대한 방역조치와 동일

▶ 철새 등 야생동물 접촉 유의사항

-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이상 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,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

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
“야생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요령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